

瑞山市 公有財産 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2001. 10. 11  
총무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2001. 9. 29

나. 提出者 : 瑞山市長

다. 回附日字 : 2001. 9. 29

라. 上程日字 : 2001. 10. 11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會計課長 : 崔春煥)

### 가. 提案理由

- 2000. 10. 20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안 제7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광역시지역은 330㎡, 일반시지역은 66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23조).
  - 일반용의 경우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6조제2항).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안 제29조제1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의2).
- 관사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개정 조례안은 2000. 10. 20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검토내용은

- 제5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만을 정하였을뿐 구체적인 위탁방법, 사용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며
- 제6조는 은익재산 신고자중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인 재산담당 공무원이 은익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이와 상충되어 삭제한 것이며
- 제7조제2항에 제2호와 3호를 신설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등을 추가하여 심의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 같은조의 제3항 신설은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 대상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소규모 재산등을 추가한 것임.
-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 이유는 현행조례 부칙에 2000. 12. 31까지 (IMF기간동안) 한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한 것이며 같은조 제4항 각호의 삭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 규정된 것이며
- 제23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일정요율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하여 요율의 형평성과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 같은조에 제10항의 신설은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과 종업원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요율 인하 규정을 두어 공장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 제24조제2항과3항을 삭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가 신설되어 동규정과 중복으로 삭제하였음.
- 제26조에 제2항의 신설은 2층이상 상업용 또는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며
- 제26조의2의 신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전세금의 관리방법등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 제29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시 연체요율을 정하고 연체료를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 처리방법 등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서 정한바대로 구체화 하고
- 제29조의2를 신설한 것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것과 같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전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 제49조에서 제55조까지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사에 대한 관사의 정의를 새로 정하고 관리방법 등을 현행에 맞게 보완한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 상위법령 개정과 중앙의 표준안에 따라 그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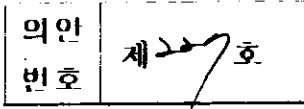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 번호	제 27 호
의결년월일	'2001. (제 회)

##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년 7 월 27 일

#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2001. 6. 16

제 출 자 : 서산시장

## 1. 개 정 이 유

- 2000. 10. 20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아래사항을 생략함(안 제7조제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광역시지역은 330㎡, 일반시지역은 660㎡이하, 군지역은 990㎡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안 제23조)
  - 일 반 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 공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 작 용 :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 거 용 :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6조제2항)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 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함(안 제29조제1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의2)
- 관사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안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

### 3. 참 고 사 망

- 지방자치법 제15조의3제2항, 제135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제84조제3항, 제84조의2, 제88조제1항 제16호, 제92조, 제92조의2,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 제107조의2
- 건축법 제49조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80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 하천법 제33조

##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1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사용허가의 제한)”을“(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사용허가 기간)”을“(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제1항중“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사용허가”를“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사용허가조건)”을“(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본문중“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사용허가”를 각각“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사용허가부의 비치)”를“(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본문중“행정재산의”를“행정재산·보존재산의”로 하며,“사용허가부”를“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3제3호중“제29조”를“제2조”로 하고,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제3항제5호중“제29조”를“제2조”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중“1000분의 50”을“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1000분의 25”를“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제2항중“1000분의 10”을“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같이 하며, 제4항중“1000분의 40”을“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제6항중“1000분의 25”를“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때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시지역내에서 조달 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의2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 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내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에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 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변상금의 청문등)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신탁의 종류)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제2호중 “제29조”를 “제2조”로 한다.

제49조중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등 소속직원의”를 “시장, 부시장의”로 한다.

제50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 관리 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중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는 삭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제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제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제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 ----- ----- -----</p>

현행	개정안
<p>1. ~ 2.(생략)</p> <p>② ~ ③(생략)</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은닉 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p> <p>(5)(생략)</p> <p>제7조(시공유재산심의회)(1)(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lt;삭제 99. 9. 10&gt;</p> <p>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2.(현행과 같음)</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5)(현행과 같음)</p> <p>제7조(시공유재산심의회)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p> <p>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 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현행	개정안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권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동 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2. 읍·면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3.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p> <p>④(생략)</p>	<p>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p> <p>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p> <p>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  -----  -----  -----  ② &lt;삭 제&gt;  -----  ③ &lt;삭 제&gt;  -----  -----  ④(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p> <p>②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생략)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p>	<p>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  -----  -----  -----  -----  ②행정재산·보존재산-----  -----  -----  1. (현행과 같음)  2. &lt;삭 제&gt;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허가 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p>	<p>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p>

현행	개정안
<p>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 -----</p>
<p>(2)(생략)</p>	<p>(2)(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용허가 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p>
<p>1. ~ 6.(생략)</p>	<p>1. ~ 6.(현행과 같음)</p>
<p>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p>	<p>7. 사용·수익허가-----</p>
<p>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8. 사용·수익허가----- -----</p>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권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 -----</p>
<p>제19조의3(생략)</p>	<p>제19조의3(현행과 같음)</p>
<p>1. ~ 2.(생략)</p>	<p>1. ~ 2.(현행과 같음)</p>
<p>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3. ----- 제2조----- -----</p>
<p>4. 시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p>	<p>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p>
<p>5.(생략)</p>	<p>5.(현행과 같음)</p>
<p>6. 기타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생략)</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현행과 같음)</p>
<p>1. ~ 3.(생략)</p>	<p>1. ~ 3.(현행과 같음)</p>
<p>4. 시장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급납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단심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p>	<p>4. &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5.(생략)</p> <p>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생략)</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생략)</p> <p>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2.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p> <p>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무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p> <p>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p> <p>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5.(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p> <p>②(현행과 같음)</p> <p>③</p> <p>1. ~ 4.(현행과 같음)</p> <p>5. -----제2조</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요금)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p>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1. ~ 2.(생략)</p> <p>⑤(생략)</p> <p>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금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 ~ ⑨(생략)</p> <p>&lt;신설&gt;</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금) ①----- ----- -----1000분의 50이상 ----- ----- -----1000분의 25이상 -----</p> <p>②----- ----- -----1000분의 10이상-----</p> <p>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 ----- 1000분의 40이상----- 1. ~ 2.(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 ----- -----1000분의 25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1000분의 10이상--- -----</p> <p>⑦ ~ ⑨(현행과 같음)</p> <p>⑩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p>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2(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외·          투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제산을 임대·대부 또          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          한다.</p> <p>1. ~ 3.(생략)</p>	<p>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사          재의 50%이상을 시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투자기업에 공유          제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p> <p>1. ~ 3.(현행과 같음)</p>
<p>제2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생략)</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          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제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허가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          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          여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p> <p>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전          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          할 수 없다.</p>	<p>제2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현행과          같음)</p> <p>② &lt;삭제&gt;</p> <p>③ &lt;삭제&gt;</p>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          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생략)</p> <p>&lt;신설&gt;</p>	<p>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 6.(현행과 같음)</p> <p>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          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          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p>

현행	개정안
<p>&lt;신 신&gt;</p>	<p>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li>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li> <li>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li> <li>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li> </ol> <p>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에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32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집유사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생략)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 3.(생략)          ④(생략)          ⑤(생략)          1. ~ 2.(생략)          3.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p>	<p>제38조(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하천법 제33조          -----          -----          -----          -----          -----          -----          1. ~ 3.(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p>





현행	개정안
<p>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 대장을 비치·정리한다.</p> <p>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생략)</li> <li>3. 보일러 운영비(단, 1급관사에 한함)</li> <li>4. 응접세트, 커튼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관사에 한함)</li> <li>5. 전기요금(단, 1·2급 관사에 한함)</li> <li>6. 전화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li> <li>7. 수도요금(단, 1·2급 관사에 한함)</li> <li>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2급 관사에 한함)</li> </ol>	<p>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p> <p>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현행과 같음)</li> <li>3. 보일러 운영비</li> <li>4. 응접세트, 커튼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li> <li>5. 전기요금</li> <li>6. 전화요금</li> <li>7. 수도요금</li> <li>8. &lt;삭제&gt;</li> </ol>